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3월 9일
김성은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구립합창단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창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단장·지휘자·반주자에 대한 위·해촉 심사 등을 심의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II. 주요골자

- 가. 단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함 (안 제4조제1항)
- 나. 지휘자 및 반주자는 공개전형 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함 (안 제4조제2항)
- 다. 운영위원회 구성 (안 제7조)
 -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
 -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종로구의회 의원 1인,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
 - 위촉직 위원 임기 2년
- 라.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안 제8조)
 - 합창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단장, 지휘자, 반주자 위·해촉에 관한 사항
 -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Ⅲ. 검토의견

○ 명절 민속행사 등 각종 축제·행사시와 국·내외 합창대회, 정기연주회 등 공연을 통해 밝고 건전한 음악을 확산, 보급하여 구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지역문화 활성화를 통한 자치구 이미지 홍보와 주민화합에 기여하는 등 구립 합창단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하겠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예외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 자치구의 최근 활동사례를 보면, 은평구립 합창단의 경우 자매결연 도시 초청 해외공연(호주 캔터베리시)을 포함, 지난해 8월에는 초. 중. 고등학생 방학에 맞춰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국내 유명 성악가와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정기연주회를 갖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성북구립 합창단의 경우도 각종 행사시 축하공연은 물론 지난해 11월 정기연주회를 관내 현대백화점에서 유명 성악가와 무용단, 대학가곡제 대상수상자 등이 특별출연한 가운데 전문MC의 사회로 성황리에 진행하였으며, 동대문구립 합창단은 지난해 7월 중국 샤먼시 개최 제4회 세계합창올림픽대회에서 전세계 89개국 400여개 합창단이 참가한 가운데 2개 종목에 걸쳐 대상과 금상을 수상하여 자치구의 대외홍보에 기여한 바 있고, 송파구립 합창단은 전국합창경연대회와 전국주부합창 페스티벌, APEC 국제합창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각 자치구 마다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반면,

종로구립합창단은 1993년 9월 13일 종로구 여성합창단으로 출발, 2004년 5월 21일 조례제정과 함께 구립합창단으로 승격하여 타 구에 비하여 설립시기가 늦은 감은 있으나, 그간 활동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합창단 단장을 포함한 지휘자 및 반주자 선발방법을 개선하고,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창단 운영에 따른 행·재정 지원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종로구립합창단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4조에서 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 위촉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특히 지휘자 및 반주자 선발시 공개전형의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최근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구립합창단 지휘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동작구의 경우 1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 안 제7조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중 당연직 공무원 2인, 구 의원 1인으로 한정된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며, 합창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 중 7개 구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현황 : 별첨 자료참조)

IV. 참고자료

○ 현행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발췌)

제2조(구성)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자로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위촉 등) ①단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지휘자 및 반주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원은 공개전형에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자중 해촉되지 않은 사람은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단원의 전형방법은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서류와 면접만으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창단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휘자, 반주자 등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현행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발췌)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사무관리는 문화진흥과장이 총괄한다.

제5조(전형위원회의 구성) ①구청장은 합창단의 단원선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립합창단원선발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공무원 1인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음악관련 분야 전문가 3인

③전형위원 중 구 소속직원은 서류 및 면접심사에만 참여한다.

④전형위원회가 개최되면 문화진흥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방법) ①지휘자 및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전형위원회의 실기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②단원의 파트별 소요인원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지휘자의 의견을 들어 선발할 수 있다.

③지휘자와 반주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로, 단원은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고, 선발된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술단(합창단)운영위원회 구성현황

자치구명	근거	구성	구성위원	기능
성북구	조례	5인이내	주민복지실장, 문화체육과장, 전문가, 5급이상 공무원	○ 합창단 운영사항 ○ 지휘자,반주자 위해촉 ○ 구청장 부의안건
강서구	조례	10인이내	구의원 2인, 부구청장, 경험자 3인,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원전산과장	○ 예술단체 운영계획수립 ○ 지휘자 등 및 단원 위해촉 ○ 구청장 부의안건
영등포구	조례	10인이내	-규칙에서 정함 행정관리국장, 지휘자, 연주자, 전문가	○ 예술단체 운영계획수립 ○ 지휘자,반주자,단원 위해촉 ○ 구청장 부의안건
관악구	조례	12인이내	구의원 2인, 부구청장, 경험자, 행정관리국장, 문화공보과장, 사회진흥과장	○ 예술단체 운영계획수립 ○ 단장,단원 등의 위해촉 ○ 구청장 부의안건
강남구	조례	9인이내	구의원 2인, 지휘자,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문화예술관련자	○ 예술단체 운영사항 ○ 지휘자,악장, 반주자 위·해촉 ○ 구청장 부의안건
송파구	조례	10인이내	-규칙에서 정함 주민생활국장, 단장, 문화예술관련전문가	○ 예술단체 운영사항 ○ 지휘자, 반주자, 단장, 단원 위·해촉
강동구	조례	12인이내	구의원 2인, 부구청장, 관계국장, 문화체육과장, 경험자	○ 예술단체 운영계획수립 ○ 단원의 위·해촉 ○ 구청장 부의안건